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무조정실에 국정운영의 효율 및 경제·사회 분야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경정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정원 4명(4급 1명, 5급 3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조세심판 청구 조정검토 업무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조정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행정실의 명칭을 심판행정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판원에 심판행정과 및 심판조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심판원에 심판조사관 17명을 두되, 각 심판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심판원에 심판조사관 17명을 두되, 각”을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실장”을 “심판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11호) 중 “조사관”을 “다른 과 및 심판조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심판제도의 개선

⑤ 심판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검토

2. 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례 및 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의 상호 저촉 여부의 검토

제20조제3항 전단 중 “38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13명, 5급 21명)”을 “43명(4급 6명, 4급 또는 5급 15명, 5급 21명, 경정 1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91”을 “296”으로, 일반직 계 “288”을 “292”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4”를 “15”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기록연구관 “15”를 “16”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7”을 “22”로, 출입국관리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2”를 “29”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1”를 신설하고, 경찰공무원 계 1 다음에 “경정 1”를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91”을 “296”으로, 일반직 계 “288”을 “292”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4”를 “15”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기록연구관 “15”를 “16”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8”을 “22”로, 출입국관리사무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

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1”을 “29”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다음에 “경찰공무원 계 1”를 신설하고, 경찰공무원 계 1 다음에 “경정 1”를 신설한다.

별표 2 중 서기관 “16”을 “17”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7”을 “6”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서기관 “16”을 “17”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을 “7”로 한다.

별표 2의5 제2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세심판원 1개 과	1명 (4급 1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	---------------	-----------------

대통령령 제34917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하부조직) ① <u>심판원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둔다.</u>	제19조(하부조직) ① <u>심판원에 심판행정과 및 심판조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u><신 설></u>	② <u>심판원에 심판조사관 17명을 두되, 각 심판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② <u>심판원에 심판조사관 17명을 두되, 각 상임심판관별 심판조사관 배치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u>	③ 각 ----- ----- ----- -----.
③ <u>행정실장과 심판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u><삭 제></u>
④ <u>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④ <u>심판행정과장</u>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검토 및 심판제도의 개선</u>	7. <u>심판제도의 개선</u>
8. <u>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례 및 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의 상호 저촉 여부의 검토</u>	<u><삭 제></u>
9. · 10. (생략)	8. · 9.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11. 그 밖에 심판원 내 <u>조사관의</u>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u><신 설></u> ⑤ (생 략) 제20조(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② (생 략) ③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u>38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13명, 5급 21명)</u>은 국무조정 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 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 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4917호 국무조정실 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같음) 10. ----- -- <u>다른 과 및 심판조사관</u>--- ⑤ <u>심판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 정의 종합조정 검토</u> 2. <u>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 례 및 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 의 상호 저촉 여부의 검토</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0조(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43명(4급 6명, 4급 또는 5급 15명, 5급 21명, 경정 1명)</u>- ----- -----. ----- ----- -----. 대통령령 제34917호 국무조정실 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	--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영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출입국관리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 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 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경 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 연구관 1명)으로 본다. ② (생략)	한 직급의 존속기한) <삭 제> (현행 제2항과 같음)
--	--

[별표 1]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91	296	+5
일반직 계	288	292	+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4	15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기록연구관	15	16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사무 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7	22	+5

출입국관리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해 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 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 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 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 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 ·	<u>32</u> · ·	<u>29</u> · ·	-3
<u>경찰공무원 계</u>	<u><신 설></u>	<u>1</u>	+1
<u>경정</u>	<u><신 설></u>	<u>1</u>	+1

[별표 1의2]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91	296	+5
일반직 계	288	292	+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4	15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기록연구관	15	16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보건사무 관 · 식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8	22	+4

출입국관리사무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해 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 품위생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 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 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 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 ·	<u>31</u> · ·	<u>29</u> · ·	-2
<u>경찰공무원 계</u>	<u><신 설></u>	<u>1</u>	+1
<u>경정</u>	<u><신 설></u>	<u>1</u>	+1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조세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u>16</u>	<u>17</u>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7</u>	<u>6</u>	-1
·	·	·	
·	·	·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의2]

조세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u>16</u>		<u>17</u>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8</u>		<u>7</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8